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20일, 강경숙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2.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6.30.)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7.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교육위원회(2025.7.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강경숙 의원)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

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020년 1.9%에서 2024년 3.0%로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상대보호구역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교육환경과 공중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학생들의 전자담배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반영한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는 담배의 개념에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여 국민의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인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둘째,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정의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해당 법률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환경법상 담배의 개념에도 자연스럽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포함될 것이므로, 개정안의 심사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